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비전임교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이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 (직명 및 소속) ① 전임연구인력의 직명은 ‘전임연구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사업목적 및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교수, HK연구교수, 계약교수, 박사급 연구원, 석박사후 과정생 등 직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임연구인력의 기본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절차 및 임용서류) ① 전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임용 45일 이전에 채용(임용)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연구과제별 인건비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임연구인력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모집·심사·추천·임용의 절차를 거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전문인력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임용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지원서(별지 제 1호 서식)
2. 학위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별표5)
7. 급여수령계좌사본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0. 기타 요청서류

⑤ 공개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 7조에서 제 9조까지를 준용한다. 단, 심사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⑥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 또는 적용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임용기간) 전임연구인력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전임연구인력은 총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급여) ① 연구책임자는 전임연구인력 임용 신청 시 인건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임연구인력 월지급액은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기준(별표1)을 적용한다.

제8조 (재임용) 재임용 대상자는 평가절차를 거치며, 평가절차와 방법 등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계약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임용 변경 신청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경
2. 인건비 자원 과제 변경
3. 기타 변경

제10조 (면직) ① 전임연구인력의 면직은 면직 1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면직 신청서(별표4)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 요청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면직된다.
③ 사업의 중단 또는 연구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금) ① 전임연구인력의 임용 시 인건비 재원에 퇴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임연구인력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월 퇴직적립금을 중도퇴직 정산하여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한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 임용자의 경우, 2019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재임용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진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비전임교원) 인건비 산정 기준

(단위: 천원)

임용 구분	임용 권자 (고용 자)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기준	월 기준 인건비 (참여율 100% 기준)		12개월 기준 인건비 (기관 부담금, 퇴직금 포함)
				월 급여 계상상한액 (기관부담금, 퇴직금 미포함)	기준단가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전임 연구 인력	총장	박사급 1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4,500	5,321	63,852
		박사급 2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5,500	6,504	78,048
		박사급 3호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	6,500	7,686	92,232
		박사급 별호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한 본교 전임교원 교수급 경력 인정자	8,000	9,459	113,508

1) 월 지급액 = 기준단가(월 급여상한액+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 참여율(%)

① 월 급여 = 월 지급액 -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월 퇴직적립금

②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예상액) = 월 급여 × 9.9%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해야 함

③ 월 퇴직적립금 = 월 급여 ÷ 12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퇴직금 = 월 퇴직적립금 × 임용기간(월)

2) 경력환산 기준

① 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하며, 부족 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

②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함.

3)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소지자, 특수한 경력자는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월 기준액을 계상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4)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기준액을 상향 계상 가능함.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

지원직종	전임연구교수
------	--------

접수번호	지원자 작성 금지
------	-----------

지원분야	소속	전공	응원 분야
	산학협력단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이메일주소	
현 직장		현 직장 직위	

학력 구분	학교명	학부(과)	전공	입학일자 (년. 월. 일)	졸업(수료)일자 (년. 월. 일)
			
			
			
			
			

취득 자격증 이름	자격증 발행기관	취득 일자(년. 월. 일)
		..
		..
		..
		..

자 기 소 개 서

1. 인적사항(학력 사항, 인화력, 교육관 및 가치관 등)

※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작성

2. 본인의 전체 경력 사항 서술 및 지원 전공 분야와의 적합성

※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별 인건비 편성표
※ 엑셀 서식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입니다.

3.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1금융권, 성북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나. 개인정보 3자 제공 목적: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지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제1금융권: 성명, 계좌번호

2) 성북세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총액, 결정세액(소득세법 제164조)

3)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법 제10조, 동법 제77조)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하신 경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